

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 · 결정

1. 사건의 명칭	담보주식 매각금지 가처분
2. 원고 · 신청인	주식회사 마O
3. 판결 · 결정내용	원고 패
4. 판결 · 결정사유	주위적,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.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 · 결정일자	2025-01-14
7. 확인일자	2025-01-15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 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 · 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 · 취하 · 인낙 · 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 ·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2025년 01월 15일

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준 기 (인)

